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람	기관의장

공보

제676호 2020. 10. 27.(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17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1
남해군 고시 제2020-177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 3
남해군 고시 제2020-178호 도로명주소 고시 ····· 5
남해군 고시 제2020-1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8
남해군 고시 제2020-1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9
남해군 고시 제2020-1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10
남해군 고시 제2020-182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1
남해군 고시 제2020-183호 남해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공설공원묘지)]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18
남해군 고시 제2020-186호 남해군계획시설[체육시설스포츠파크] 사업(파크골프장 조성)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1224호 공 시 송 달(보상협의) 공 고 ····· 22
남해군 공고 제2020-1233호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6
남해군 공고 제2020-1248호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 31
남해군 공고 제2020-1255호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 55
남해군 공고 제2020-126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57
남해군 공고 제2020-1265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 58
남해군 공고 제2020-1268호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0
남해군 공고 제2020-1275호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4
남해군 공고 제2020-1277호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71
남해군 공고 제2020-1280호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6
남해군 공고 제2020-1287호 남해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1
남해군 공고 제2020-1292호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87
남해군 공고 제2020-1293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 107
남해군 공고 제2020-1295호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115
남해군 공고 제2020-1297호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122
남해군 공고 제2020-129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136
남해군보건소 공고 제2020-42호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37

회 람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 - 17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 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남 해 군 수

1. 붕괴위험지역 지정현황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 정 사 유
		유형	등급	면적(㎡)	
계	5개소			17,200	
금천	삼동면 동천리 산184번지 일원	붕괴위험	D	11,695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항	미조면 미조리 105-2번지 일원	붕괴위험	D	2,995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양화금	삼동면 동천리 산311-1번지 일원	붕괴위험	D	2,120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천동	고현면 포상리 988-8번지 일원	붕괴위험	D	7,844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큰양아	상주면 양아리 산290번지 일원	붕괴위험	D	12,540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남해군 안전총괄과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남해군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4.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20. 10. 8.

5.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가. 추후 예산확보 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시행

6.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남해군 재난안전과(☏ 055-860-3294)

남해군 고시 제2020 - 177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12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기준점) 고시내역

[남해군]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도근점	14001	중부	134325.99	293660.08	234634.936	293735.048	76.454	128-1-23.1705	34-42-11.1928	2020-01-10	미조면 송정리 산359-2	pvc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4002	중부	134377.43	293606.79	234686.369	293681.757	69.614	128-1-21.0973	34-42-12.8792	2020-01-10	미조면 송정리 산359-2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4003	중부	134485.07	293569.40	234794.006	293644.365	58.298	128-1-19.6712	34-42-16.3840	2020-01-10	미조면 송정리 896-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4004	중부	134489.24	293622.43	234798.180	293697.388	53.637	128-1-21.7561	34-42-16.5019	2020-01-10	미조면 송정리 899-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4005	중부	134603.94	293668.98	234912.883	293743.943	41.29	128-1-23.6310	34-42-20.2082	2020-01-10	미조면 송정리 917-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4006	중부	135512.55	293750.81	235821.478	293825.764	35.745	128-1-27.2091	34-42-49.6616	2020-09-22	미조면 송정리 산304-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4007	중부	135352.24	293800.63	235661.174	293875.587	36.777	128-1-29.1026	34-42-44.4439	2020-09-22	미조면 송정리 산348-17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4008	중부	135288.56	293787.60	235597.491	293862.560	29.503	128-1-28.5653	34-42-42.3819	2020-09-22	미조면 송정리 산304-7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4009	중부	135099.55	293791.48	235408.478	293866.442	57.881	128-1-28.6422	34-42-36.2479	2020-09-22	미조면 송정리 산35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4010	중부	135010.82	293698.32	235319.752	293773.281	77.939	128-01-24.9462	34-42-33.3998	2020-09-22	미조면 송정리 산352-2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4011	중부	134975.26	293640.42	235284.187	293715.379	84.798	128-1-22.6571	34-42-32.2650	2020-09-22	미조면 송정리 산352-2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4012	중부	134930.4	293584.04	235239.331	293659	81.847	128-1-20.4240	34-42-30.8282	2020-09-22	미조면 송정리 산352-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남해군 고시 제2020 - 17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768-1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0.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 여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768-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689-53	20200903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410-2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400-42	20200917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23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54-13	20200917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632-9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423	20200901		20090427	남해본섬과 창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30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질개로 63-20	20200910		20090427	도산의 순우리말로 질그릇을 만들었던 곳을 의미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86-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61-1	20200904		20090427	남해읍 소재지의 중심도로로서 아름다운 남해를 나타내는 옛 지명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4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439	20200908		20090427	고려 충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17-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911	20200917		20090427	고려 충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40-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930	20200914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1658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747	20200921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19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431번길 40	20200917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4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2984번길 68-64	20200924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18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690번길 7-10	20200901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00m지점에서 오른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862-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560번길 3	20200921		20091023	상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41-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46번길 5	20200924		20161209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의한 구간변경

폐 지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821번길 11-6		20200917	현존하지 않음	20090427	흥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20 - 1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봉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도시건축과)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점용목적 :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교량 재가설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594번지 외 3필지
6. 점용면적 : 506㎡(임시점용 603㎡)
7. 점용기간 : 2020. 10. 19. ~ 영구점용

남해군 고시 제2020 - 1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금양천(지방하천)
2. 성 명 : 하차O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4. 점용목적 : 오수관매달기
5. 점용위치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82, 2182-17번지(666번지 인근)
6. 점용면적 : 1㎡
7. 점용기간 : 2020. 10. 19. ~ 2025. 10. 18.

남해군 고시 제2020 - 1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금평천(지방하천)
2. 성 명 : 박승0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4. 점용목적 : 배수관로설치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948, 1547번지
6. 점용면적 : 8㎡
7. 점용기간 : 2020. 10. 19. ~ 2025. 10. 18.

남해군 고시 제2020 - 182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0-481호(2020.10.08.)로 고시된 남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남 해 군 수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붙임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붙임>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9,490,215.7	-	579,490,215.7	100.00	
육지부 합계			357,678,651.7	-	357,678,651.7	61.72	
도시지역	소계		11,801,283.0	-	11,801,283.0	2.04	
	주거지역	소계	1,264,968.0	-	1,264,968.0	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	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0.01	
	상업지역	소계	183,713.0	-	183,713.0	0.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계	10,352,602.0	-	10,352,602.0	1.7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	2,569,007.0	0.44	
		자연녹지지역	7,783,595.0	-	7,783,595.0	1.34	
관리지역	소계		136,652,330.7	증)887,092.4	137,539,423.1	23.73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47,236,052.1	증)21,730.0	47,257,782.1	8.15	
	생산관리지역		53,325,240.0	증)801,210.4	54,126,450.4	9.34	
	계획관리지역		36,091,038.6	증)64,152	36,155,190.6	6.24	
농림지역			153,896,380.0	감)887,092.4	153,009,287.6	26.40	
자연환경보전지역			55,328,658.0	-	55,328,658.0	9.55	
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0	38.28	

※ 기정 :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경상남도고시 제2020-285호, 2020.06.11.)

나. 행정구역별 지정내역(변경후)

구분	합계(㎡)	면적(㎡)					비고
		남해읍	이동면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	
합계	357,678,651.7	27,156,970.0	47,039,577.0	23,796,140.0	51,415,074.0	15,542,021.0	
주거지역	1,264,968.0	1,264,968.0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1,190,548.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	
준주거지역	74,420.0	74,420.0	–	–	–	–	
상업지역	183,713.0	183,713.0	–	–	–	–	
중심상업지역	–	–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183,713.0	–	–	–	–	
근린상업지역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공업지역	–	–	–	–	–	–	
전용공업지역	–	–	–	–	–	–	
일반공업지역	–	–	–	–	–	–	
준공업지역	–	–	–	–	–	–	
녹지지역	10,352,602.0	10,352,602.0	–	–	–	–	
보전녹지지역	–	–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2,569,007.0	–	–	–	–	
자연녹지지역	7,783,595.0	7,783,595.0	–	–	–	–	
관리지역	137,539,423.1	8,103,299.0	11,918,045.0	3,210,909.0	17,738,385.0	5,391,655.0	
보전관리지역	47,257,782.1	4,941,375.0	3,831,290.0	335,847.0	6,527,742.0	1,241,260.0	
생산관리지역	54,126,450.4	1,477,981.0	5,079,626.0	1,165,176.0	6,687,650.0	1,776,967.0	
계획관리지역	36,155,190.6	1,683,943.0	3,007,129.0	1,709,886.0	4,522,993.0	2,373,428.0	
농림지역	153,009,287.6	4,349,756.0	24,185,258.0	282,430.0	33,023,555.0	8,839,729.0	
자연환경보전지역	55,328,658.0	2,902,632.0	10,936,274.0	20,302,801.0	653,134.0	1,310,637.0	
미지정	–	–	–	–	–	–	

< 표 계속 >

구분	면적(㎡)					비고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창선면	
합계	43,512,669.0	40,991,689.0	28,928,632.0	24,914,905.0	54,380,974.7	
주거지역	-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준주거지역	-	-	-	-	-	
상업지역	-	-	-	-	-	
중심상업지역	-	-	-	-	-	
일반상업지역	-	-	-	-	-	
근린상업지역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공업지역	-	-	-	-	-	
전용공업지역	-	-	-	-	-	
일반공업지역	-	-	-	-	-	
준공업지역	-	-	-	-	-	
녹지지역	-	-	-	-	-	
보전녹지지역	-	-	-	-	-	
생산녹지지역	-	-	-	-	-	
자연녹지지역	-	-	-	-	-	
관리지역	21,430,375.4	18,675,690.0	14,542,996.5	9,707,494.5	26,820,573.7	
보전관리지역	6,616,730.0	6,408,349.0	5,257,289.1	2,745,740.0	9,352,160.0	
생산관리지역	8,740,930.4	7,705,570.0	5,855,423.5	5,265,666.5	10,371,460.0	
계획관리지역	6,072,715.0	4,561,771.0	3,430,283.9	1,696,088.0	7,096,953.7	
농림지역	21,763,567.6	22,315,999.0	11,250,556.5	4,215,656.5	22,782,780.0	
자연환경보전지역	318,726.0	-	3,135,079.0	10,991,754.0	4,777,621.0	
미지정	-	-	-	-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1) 보전관리지역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변경(결정)사유
		기 정	변 경		
A-사-4	고현면 남치리 729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93.0	· 농지법 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보전적성이 강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C-아-2	남해읍 평리 19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416.0	
D-사-9	삼동면 봉화리 1409-4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188.0	
D-사-10	삼동면 봉화리 1384-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89.0	
D-사-11	삼동면 봉화리 1384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19.0	
D-사-12	삼동면 봉화리 141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0.0	
D-사-13	삼동면 봉화리 2425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365.0	
D-사-18	삼동면 봉화리 1596-4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72.0	
D-사-19	삼동면 봉화리 1675-4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99.0	
D-아-2	삼동면 영지리 79-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51.0	
D-아-3	삼동면 영지리 산214-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0.0	
G-다-1	이동면 무림리 1644-119번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0,478.0	

2) 생산관리지역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변경(결정)사유
		기 정	변 경		
A-가-1	고현면 도마리 1878-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86,564.0	· 농지법 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생산적성이 강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A-라-1	고현면 오곡리 1868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212.1	
A-라-2	고현면 도마리 731-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7,478.0	
A-마-1	고현면 도마리 1581-7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1,485.0	
A-바-1	고현면 도마리 1890-3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4,397.0	
A-사-5	고현면 갈화리 1313-2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35.0	
A-사-9	고현면 도마리 705-6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6.0	
A-사-10	고현면 도마리 704-1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619.0	
A-사-11	고현면 도마리 724-18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574.0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변경(결정)사유
		기 정	변 경		
A-사-13	고현면 대곡리 1114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55.0	· 농지법 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생산적성이 강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A-사-16	고현면 대곡리 1042-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836.0	
A-사-17	고현면 대곡리 1094-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10.0	
A-사-18	고현면 이어리 163-3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93.0	
A-사-21	고현면 도마리 697-7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	
A-아-3	고현면 대곡리 184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8,149.4	
B-라-1	남면 덕월리 130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5,685.4	
B-라-2	남면 석교리 597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6,650.0	
B-사-7	남면 선구리 991-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17.0	
C-마-1	남해읍 평현리 87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7,324.0	
D-가-1	삼동면 금송리 909-13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4,011.0	
D-가-2	삼동면 동천리 1960-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1,082.0	
D-나-1	삼동면 금송리 1006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5,854.0	
D-라-1	삼동면 영지리 3038-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4,418.0	
D-마-1	삼동면 물건리 895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9,603.0	
D-사-2	삼동면 영지리 2268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355.0	
D-사-3	삼동면 영지리 130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08.0	
D-사-4	삼동면 영지리 138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37.0	
D-사-8	삼동면 봉화리 132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71.0	
D-아-1	삼동면 영지리 133-4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602.0	
E-가-1	서면 정포리 1096-9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0,711.0	
E-마-1	서면 정포리 1077-10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1,665.0	
E-마-2	서면 서호리 742-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5,206.0	
E-아-1	서면 연죽리 산10-5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135.0	
F-가-1	설천면 문항리 1088-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8,755.0	
F-가-2	설천면 진목리 73-20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8,565.0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변경(결정)사유
		기 정	변 경		
F-마-1	설천면 문항리 347-3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5,190.0	· 농지법 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생산적성이 강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F-마-2	설천면 문항리 271-10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5,386.0	
F-마-3	설천면 비란리 78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5,438.5	
F-사-4	설천면 진목리 672-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512.0	
G-나-1	이동면 다정리 1149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6,913.0	
G-라-1	이동면 다정리 84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8,382.0	
G-라-2	이동면 용소리 320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7,764.0	
G-사-3	이동면 초음리 1070-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07.0	
G-사-6	이동면 난음리 2082-1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59.0	
H-가-1	창선면 옥천리 485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2,785.0	
H-나-1	창선면 상신리 326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60,564.0	
H-마-1	창선면 오용리 1137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2,520.0	

3) 계획관리지역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변경(결정)사유
		기 정	변 경		
A-사-1	고현면 남치리 501-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619.0	· 농지법 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주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A-사-19	고현면 도마리 1873-1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973.0	
A-사-20	고현면 도마리 1870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439.0	
B-사-8	남면 석교리 313-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49.0	
D-나-2	삼동면 봉화리 111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0,222.0	· 독일마을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D-사-1	삼동면 금송리 583-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04.0	· 농지법 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중 주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D-사-17	삼동면 물건리 106-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23.0	
G-사-1	이동면 초음리 1999-6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06.0	
G-사-2	이동면 다정리 825-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28.0	
G-아-3	이동면 난음리 110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489.0	

남해군 고시 제2020 - 183호

남해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공설공원묘지)]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기 시행된 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누락을 시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연죽리 96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공설공원묘지)]
   ○ 명 칭 : 남해추모누리 장사시설 확충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화장장 3,021.80㎡(금회 증축 21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남해군수(담당부서:주민복지과)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2018. 7.

○ 준공예정일 : 2019. 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고
	면·리	지번				주소	성명		
1	서면 연죽리	961-1	잡	9,698	9,698		남해군	-	
합계				9,698	9,698				

남해군 고시 제2020 - 186호

남해군계획시설[체육시설:스포츠파크] 사업(파크골프장 조성)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1998-49호(1998.03.14.)로 최초 결정고시되고 남해군 고시 제2013-2호(2013.01.10.)로 최종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2. 파크골프장의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해군청(도시건축과☏055-860-3413, 체육진흥과☏055-860-8662)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체육시설) 조성사업
   ○ 명칭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8,507㎡(파크골프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남해군수(담당부서: 체육진흥과)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0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202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108,875	8,507					
1	서면	서상리	1182	1	잡	108,875	8,507	남해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 1224호

공 시 송 달(보상협의) 공 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2. 사업의명칭 :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4. 공고기간 : 2020년 10월 12일 ~ 2020년 10월 26일
5. 협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0. 10. ~ 2020. 11.
   ○ 장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재난안전과)
   (T: 055-860-3421, F: 055-860-3727)
6.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우리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매도용 1통, 매수자 : 남해군, 3844)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기재) 1통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붙임]

[공시송달대상 토지 등의 표시]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남해군)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현황	당초	편입					
상주면 양아리	1255-1	임	임	109.0	51.0	미등기1		정*호		토지대장상 소유자
								정*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길 **, ***동 ***호(**동, ***아파트)	상속인
								정*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번길 ***(**동)	상속인
								정*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길 **, ***동 ***호(**동, ***아파트)	상속인
								정*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번길 *, ****호(**동, ****아파트)	상속인
								정*용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포로 **번길 *, ***동 ***호(**동, ***사하)	상속인
								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 ***동 ****호(**동, *****빌)	상속인
								정*자	울산광역시 중구 도화골 **길 *-*, ***호(**동, **빌리지)	상속인
								정*룡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 번길 **	상속인
								정*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 *동 ***호(**동, ****아파트)	상속인
								이*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 번길 **	상속인
								정*옥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 *아파트 ***-****	상속인
								정*철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 **, ***호(**동, **데파트)	상속인
								김*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 번길 **-*	1255-1 재산세납부자
								정*철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번길 **, ****동 ****호(**동, ****)	상속인
상주면 양아리	1256-1	전	전	796.0	796.0	정*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	정*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청남로 **, ***동 ***호(**동, **아파트)	상속인
								정*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 ****동 ****호(***** 아파트)	상속인
								김*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 번길 7*-*	1256-1 재산세납부자
								정*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로 **, ***동 ****호(**동, *****)	상속인
								정*민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 번길 **-*	상속인
상주면 양아리	1257-1	전	전	1,157.0	568.0	미등기2		정*호		토지대장상 소유자
								정*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길 **, ***동 ***호(**동, ***아파트)	상속인
								정*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번길 ***(**동)	상속인
								정*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길 **, ***동 ***호(**동, ***아파트)	상속인
								정*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번길 *, ****호(**동, ****아파트)	상속인
								정*용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포로 **번길 *, ***동 ***호(**동, ***사하)	상속인
								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 ***동 ****호(**동, *****빌)	상속인
								정*자	울산광역시 중구 도화골 **길 *-*, ***호(**동, **빌리지)	상속인
								정*룡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 번길 **	상속인
								정*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 *동 ***호(**동, ****아파트)	상속인
								이*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 번길 **	상속인
								정*옥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 *아파트 ***-****	상속인
								정*철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 **, ***호(**동, **데파트)	1257-1 재산세납부자
								김*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 번길 **-*	상속인
								정*철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번길 **, ****동 ****호(**동, ****)	상속인

[붙임]

[공시송달대상 토지 등의 표시]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남해군)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현황	당초	편입					
상주면 양아리	1266-1	전	전	122.0	14.0	정*수	남해군 이동면 양아리 *** *	정*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 *동 ***호(**아파트)	1266-1 재산세납부자
상주면 양아리	1272-1	전	전	225.0	54.0	정*세	부산 서구 서대신동*가 ***	김*순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 *** 동 *****호 (서대신동*가, *** *아파트)	상속인
								정*출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 *** 동 *****호 (서대신동*가, *** *아파트)	1272-1 재산세납부자
								정*석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 **, ***동 ***호 (** ***)	상속인
								정*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번길 **, *층 (**동)	상속인
								정*윤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번길 **, *동 ***호(항동*가, **맨숀)	상속인
								정*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번길 **, *동 ***호 (**동, ***** 맨션)	상속인
상주면 양아리	산265-7	임	임	17,785.0	153.0	이*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길 **, ***동 * ***호(****타운)			
상주면 양아리	산267-4	임	임	2,661.0	652.0	강*성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동계*길**-**			
상주면 양아리	산270-1	임	임	3,471.0	676.0	김*환	남해군 이동면 양아리 **	김*수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 번길 **	산270-1 재산세납부자
상주면 양아리	산270-1	임	임	3,471.0	676.0	김*홍	남해군 이동면 양아리 **	김*열	서욱특별시 관악구 신원로*다길 *, *** 호(**동)	상속인
								김*열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노도길 **	상속인
								김*수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 번길 **	산270-1 재산세납부자
상주면 양아리	산270-1	임	임	3,471.0	676.0	김*조	남해군 이동면 양아리 **	박*엽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노도길 **-*	상속인
								김*선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	상속인
								김*만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가 ***-**	상속인
								김*식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 *** 동 ***호(**동, **아파트)	상속인
								김*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시장로 **번가길 **-*(**동)	상속인
								김*수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 번길 **	산270-1 재산세납부자
상주면 양아리	산272-1	임	임	14,678.0	183.0	정*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 *	정*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청남로 **, ***동 ***호(**동, **아파트)	상속인
								정*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 ***동 ****호(*** ** 아파트)	상속인
								김*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 번길 7**-*	산272-1 재산세납부자
								정*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로 **, ***동 ****호 (**동, ***** *)	상속인
								정*민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 번길 **-*	상속인
상주면 양아리	산272-2	임	임	14,678.0	52.0	정*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 *	정*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청남로 **, ***동 ***호(**동, **아파트)	상속인
								정*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 ***동 ****호(*** ** 아파트)	상속인
								김*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 번길 7**-*	산272-2 재산세납부자
								정*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로 **, ***동 ****호 (**동, ***** *)	상속인
								정*민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 번길 **-*	상속인

남해군 공고 제2020 - 1233호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의 의무 규정 삭제

3. 주요내용
   가. 수탁자 선정(제7조)
   ❍ “교부하여 협약내용을 공증” → “교부” 로 변경

4.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11월 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977, 팩스 055-860-3982
전자우편(이메일) : doeun646@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식품산업팀(055-860-3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 견 제출자	성 명 (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교부하여 협약내용을 공증”을 “교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탁자 선정) ①·② (생 략)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한 후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교부---------- ---.

남해군 공고 제2020 - 1248호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남 해 군 수

1. 예규명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2. 제정이유
남해군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 도모

3.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제1호

4. 행정예고 기간 : 2020. 10. 15. ~ 2020. 11. 05.(21일)

5.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0년 11월 05일까지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사항 및 기타의견

나. 의견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4,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860-30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행정예고 내용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안)		
2. 당사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남해군 예규 제 호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해군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 군수 “라 한다)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군수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상담 및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한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군수는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및 군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8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지침은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9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한다.

제12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순서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을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3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를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4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내용과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계속하여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한데 묶어 관리한다.

④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하여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8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을 할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 공익신고센터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는 조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군수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받고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 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재교부를 요청하거나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20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9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8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0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은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직자는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직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신변보호 안내) 군수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의 감면) ① 군수는 공직자의 공익신고등을 통해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그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직자가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7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군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3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군수는 군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1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군수는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2조(협조 등의 요청) 군수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남해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공 익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	비고
201x - 00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남해군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남해군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남해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남해군수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20 년 월 일 접수
20 공익 제 호

담당자	담당	책임관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자	담당	책임관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20 . . . 까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사항 처리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남해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공익신고자		[ ] 외부 공익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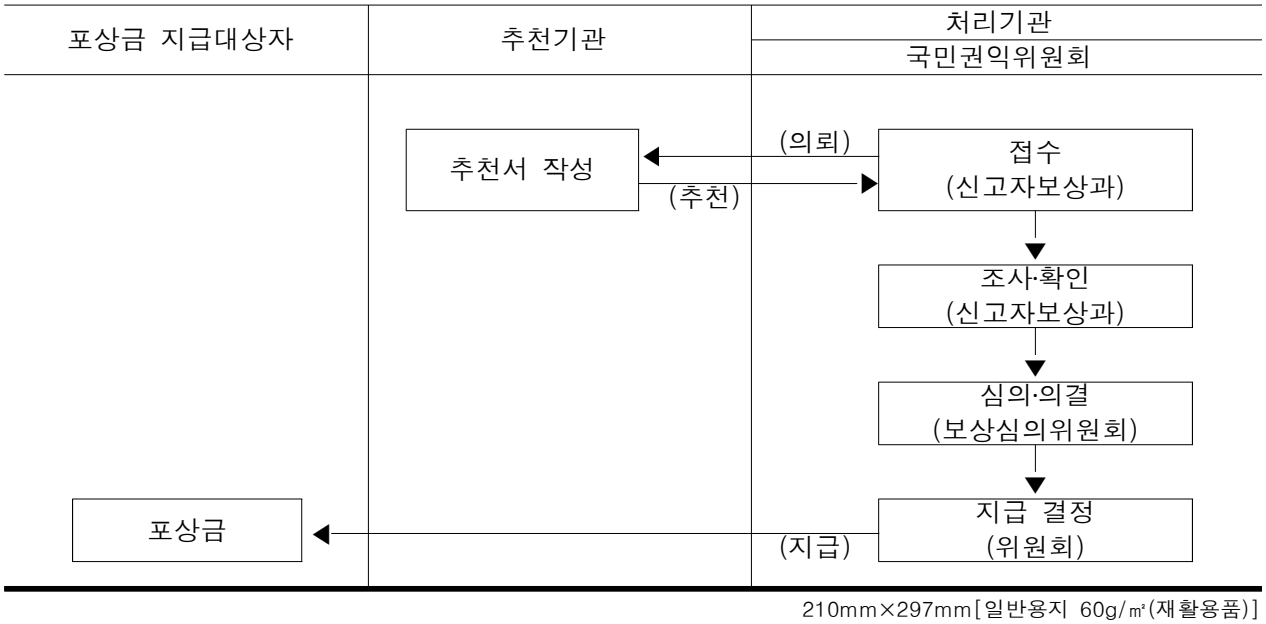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해군 공고 제2020 - 1255호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남 해 군 수

○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체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152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미조 송정	189,100	2020.10.16 2030.10.15 (10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14번길 43	김창영	제78호 재개발

○ 정치망 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체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78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미조 송정	189,100	2000.10.16 2020.10.15 (20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14번길 43	김창영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

※ 2020/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남해 정치 제 152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 척 : 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정치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정치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4. 기점 및 각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 N 34-44-12.303, E 128-02-26.169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189,100 ㎡

보호구역		
	위 도	경 도
거	34-44-30.311	128-02-58.296
너	34-44-06.032	128-03-21.544
더	34-43-29.923	128-02-25.488
러	34-43-53.519	128-02-02.750

경위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44-13.225	128-02-32.230	가나	610
나	34-43-57.579	128-02-46.916	나다	310
다	34-43-51.418	128-02-37.284	다라	610
라	34-44-07.064	128-02-22.599	라가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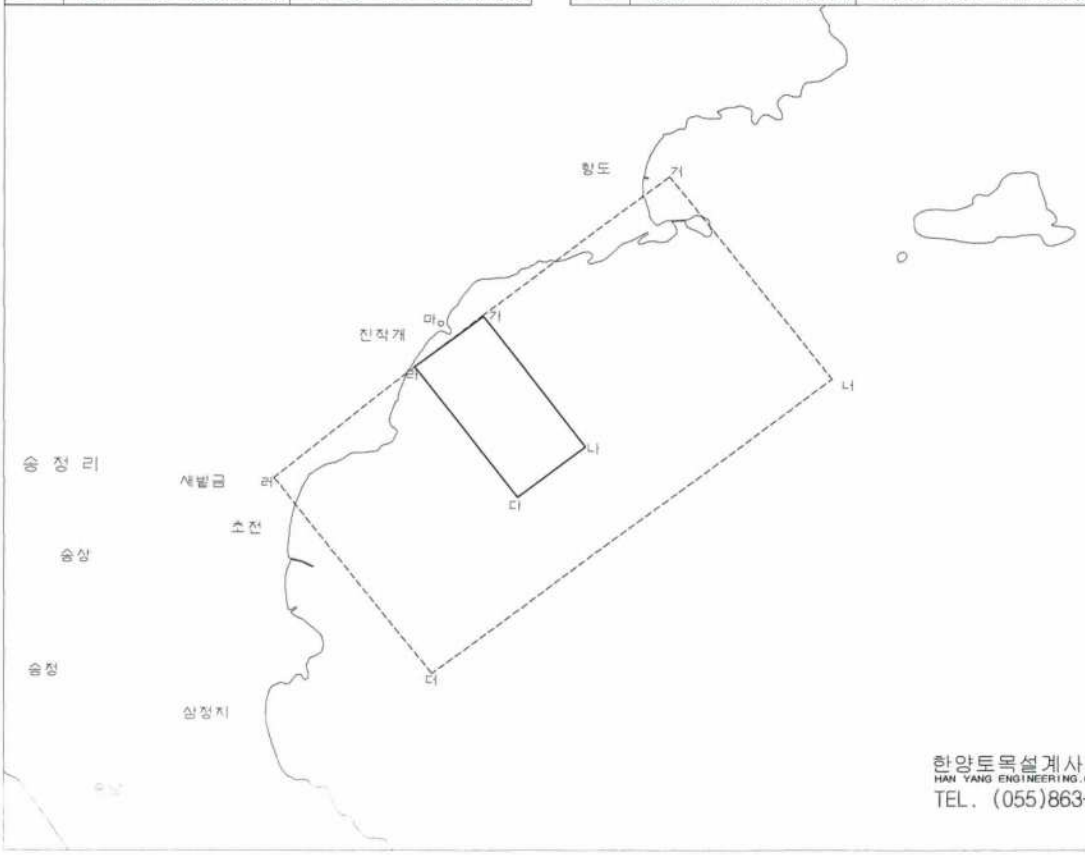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
HAN YANG ENGINEERING.CO
TEL. (055)863-13

남해군 공고 제2020 - 126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정순0	주소	남해군 설천면 창남로
소하천명		남양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1643-5번지		
	면적	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10. 19. ~ 2025. 10. 18.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설치		

남해군 공고 제2020 - 1265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남 해 군 수

1. 2020년 3분기 임대차계약(임대조건) 신고 현황

신고일	임대주택 도로명주소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2020-07-0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망운로21번길 115 302실	5,000,000	320,000
2020-07-0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망운로21번길 115 203실	5,000,000	320,000
2020-07-0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85-1 남양연립주택 1층 105호	3,000,000	350,000
2020-07-0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85-1 남양연립주택 2층 204호	0	400,000
2020-07-0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두양로312번길 15(죽전광명홍타운) B동 104호	25,000,000	250,000
2020-07-0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망운로21번길 115 206실	5,000,000	280,000
2020-07-1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망운로21번길 115 303실	10,000,000	290,000
2020-07-2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층 206호	10,000,000	330,000
2020-07-2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층 302호	10,000,000	340,000
2020-07-2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층 407호	10,000,000	380,000
2020-07-2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동 3층 303호	10,000,000	320,000
2020-07-2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층 406호	10,000,000	330,000
2020-07-2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동 2층 202호	10,000,000	370,000
2020-07-2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동 2층 203호	5,000,000	350,000
2020-07-2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층 204호	10,000,000	370,000
2020-07-2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85-1 남양연립주택 4층 405호	3,000,000	360,000

신고일	임대주택 도로명주소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2020-08-0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층 404호	10,000,000	360,000
2020-08-13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791-1 외 1필지 2동	3,000,000	350,000
2020-08-1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099-4 1동 401실	0	400,000
2020-08-1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099-4 1동 404실	0	400,000
2020-08-1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099-4 1동 403실	0	400,000
2020-08-1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099-4 1동 402실	0	400,000
2020-08-2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61번길 6 1동 301실	1,000,000	310,000
2020-08-2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61번길 6 1동 303실	3,000,000	330,000
2020-08-3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두양로312번길 15(죽전광명홍타운) 404호	50,000,000	150,000
2020-09-0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층 205호	5,000,000	360,000
2020-09-1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122번길 37-15 1동 304실	80,000,000	0
2020-09-2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122번길 37-15 1동 306실	80,000,000	0
2020-09-2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나길 24 주1동 307실	5,000,000	300,000
2020-09-2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나길 24 주1동 308실	5,000,000	300,000
2020-09-2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4-4 도원빌라 2층 202호	10,000,000	340,000
2020-09-2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38번나길 24 주1동 304실	10,000,000	300,000

남해군 공고 제2020 - 1268호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2. 개정이유

법령상 통합(대행) 근거 없이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집행과 같은 부작용들이 우려되므로, 해당규정을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서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결정사항)13항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삭제>

4.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는 2020.11.0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을 제출할 곳

1) 주 소 : ㉾52413,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

2) 연락처 : 팩스 055-860-3035, 전화 055-860-303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전화 055-860-30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 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⑬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 항	<삭 제>
⑭ ~ ⑲ (생 략)	⑭ ~ ⑲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20 - 1275호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해양경비안전서 등 기관 명칭 변경 반영 및 관할 해역의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의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세부 지원방안 확대 마련.

3. 주요내용

가. 수난구호 참여 활동 지원대상 경비 구체화

1) 현행 :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포괄적 규정

2) 개정 : 수난구호 참여 활동 구체적 열거(출동 또는 동원에 따른 경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그 밖에 수난구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나. 수난구호 참여 활동 지원대상 조난사고 확대

1) 현행 : 남해군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2) 개정 : 남해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남해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남해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단, 타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

다. 지원금 환수조치 관련 조항 구체화
1) 현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개정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11월 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해양수산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353, 팩스 055-860-370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전화 055-860-3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의 견 제출자	성 명(명 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데 소모된 유류비와 인건비, 장비·물품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남해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남해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남해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단, 타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가산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성어기 동원, 야간 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의 경우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난구호 참여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금지)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착오 등의 사유로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초과된 지원금을 환수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사람에게 「남해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수난구호 비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난사고명				
활동 명세	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시간)		
	동원장비			
	활동구분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인명구조 [ ] 구난활동		
	세부 수행사항			
선박동원 내역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선명	(톤)	선종	
	소유자		기관마력	
	사용연료	[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구호비용	금액	금 원		
	산출근거	※필요시 첨부서류 제출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찰서장 (인)** **소 방 서 장 (인)**

「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청	→	접수
신청인		해양경찰서 소방서장		해양경찰서 소방서장		해양경찰서 소방서장		신청인		남해군수

남해군 공고 제2020 - 1277호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우리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와 군 자체로 운영 중인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제1조, 제2조, 제3조)
나. 해설사 직무에 관한 사항(제4조)
다. 남해군의 책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라. 해설사 교육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11월 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콘텐츠팀

2) 연락처 : 팩스 055-860-3748, 이메일 goduddl720@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콘텐츠팀(전화 055-860-85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견 제출자	성 명(명 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문화관광해설사에 적용한다.(이하 “해설사”라 한다)

1.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남해군 관광도우미로 선발된 사람

제4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관광객·탐방객이 해설을 요청하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명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군의 관광문화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단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교육)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홍보 및 군 소재 문화관광자원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1280호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가. 마을안전 지킴이의 위촉 범위 확대
   나. 마을안전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남·여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으로 국한되어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보완 및 확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마을안전 지킴이의 위촉 범위 확대(안 제5조)
   남·여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에 국한 하는 것을 남·여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 중에서 행정리마다 지킴이 1명을 위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을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11월 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22, 팩스 055-860-3727
전자우편(이메일) : hyeran71@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명 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청년회장에 국한하여”를 “청년회장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을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킴이의 위촉 등) ①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마을 사정에 밝은 남·여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에 국한하여 행정리마다 지킴이 1명을 위촉한다. <단서 신설>	제5조(지킴이의 위촉 등) ① ---------- ---------- 청년회장 중에서 ----------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을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20 - 1287호

남해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남해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관한 규칙」중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30368호) 시행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 반영 및 개선.보완으로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 농촌진흥사업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하여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남해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관한 규칙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368호)

○ 심의회 기능에 ‘국고보조사업 및 시·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사항’ 추가

- 신기술보급사업 등 농촌진흥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의 법적 근거 명확화,
-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근거 부족 등 감사 지적과 중복 심의(지방보조금심의회) 문제 해결
- 지자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구성에 농업단체 대표 임기 조항 삭제
- 농업단체 대표(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의 위원 위촉의 지속성 확보로 심의회 운영의 실효성과 지역 농업·농촌의 대표성 확보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한 : 2020년 11월 1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 농업기술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951, 팩스(전송) 055-860-3983
이메일 yys6461@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환경농업팀(전화 055-860-39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출자	성 명(명 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개정안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1994. 9. 28 대통령령 제14773호) 제2호에 따라 남해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심의회”를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남해군생활개선회장, 농업인후계자남해군연합회장”을 “생활개선남해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남해군연합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4명”을 “5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5.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도비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1994. 9. 28 대통령령 제14773호) 제2호에 따라 남해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
제2조(설치) 심의회는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제2조(설치)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농촌지도자남해군연합회장, 남해군생활개선회장, 농업인후계자남해군연합회장을 포함한 남해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	3. ---------- 생활개선남해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남해군연합회장----------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을 포함한 4명 이내	4. 그 밖에 ---------- 5명 ----
5. 위위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이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 · 지도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 · 도비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20-1292호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
   나. 판매대행점 · 가맹점 등록 추가 절차 정정

3. 주요 내용
   가. 판매대행점 협약 · 가맹점 취소 군 홈페이지 공개
   나. 기타 조례안 용어 변경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11월 1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93, 팩스 055-860-3706
전자우편(이메일) : guracraft@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지역경제팀(전화 055-860-31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견 제출자	성 명(명 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해화폐 화전의 유통 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해화폐 화전(이하 “남해화폐”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남해화폐의 발행 및 유통)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남해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남해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남해화폐의 유통지역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남해화폐의 종류는 종이형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⑥ 남해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남해화폐의 발행권자
2. 남해화폐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남해화폐의 유통지역
4. 남해화폐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남해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남해화폐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또는 협약의 절차 등을 규정할 수 있음)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남해화폐의 판매량은 매일, 환전금액 및 환전잔액,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남해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3. 군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제2항 및 법 제7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등록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등록의 해지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남해화폐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8조(남해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남해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 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해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남해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남해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남해화폐의 홍보
3. 남해화폐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란 100분의 5을 말하며, 할인판매의 경우 개인 일 30만원 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남해화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5. 남해화폐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제9조(지원) 군수는 남해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남해화폐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남해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남해화폐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남해화폐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군수는 남해화폐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화폐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해화폐 발행에 관한 사항
2. 남해화폐 활성화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남해화폐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해화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해화폐 출납 및 정산) ①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남해화폐를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남해화폐 수불대장에 남해화폐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남해화폐 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제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한 가맹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사유발생일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가맹점은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환전청구) ① 법 제9조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별지 제8호서식의 환전 청구서에 청구금액만큼의 남해화폐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전기한은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 환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제5조(환전된 남해화폐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남해화폐를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남해화폐를 날짜별로 분류하여 회수한 날부터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남해화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천공된 남해화폐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남해화폐의 구매한도)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남해화폐 사용자당 구매한도는 액면금액 30만원으로 한다.

제7조(본인인증) 법 제19조에 따라 남해화폐의 건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남해화폐를 처음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해화폐 인계인수서

(제2조 관련)

1. 상품권 현황

(단위 : 천원/매)

권면금액	발 행 내 역		판 매 내 역		보 유 내 역	
	매 수	발행액	매 수	판매액	매 수	보유액
계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2. 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환전액	미환전액	이자발생액	통장잔액	비 고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해화폐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판매처별 남해화폐 수불현황

판매 일자	판매처	작업 구분	일련 번호	발행 연도	권종	시작 번호	종료 번호	수량	고객 코드	고객명	성 별	결제	비고

[별지 제3호서식]

남해화폐 판매 정산서
(년 월)

1. 보유현황 (단위 : 매/천원)

구 분	전월보유누계		금월발행		금월판매		잔 량		비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계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2. 판매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전월판매누계	금월판매액	비 고
계				

3. 환전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전월환전누계	금월환전액	비 고
계				

4. 미환전 잔액 및 통장잔액 비교 (단위 : 원)

미환전 이월액 (A)	금 월 판매액 (가)	금 월 환전액 (나)	미환전 잔 액 (B=A+가-나)	통장잔액 (C)	차액 (D=B-C)

5. 차액내역(D=E-F+G-H+I) (단위 : 원)

전월미수금 회수액(E)	금 월 환전 미지급액(F)	금월 외상 판매액(G)	이자발생액 (H)	이자 세입 조치액(I)

※ 붙 임 : 항목별 증명자료 등

년 월 일

작성자(담당자) 직 성 명 (인)
확인자(과 장) 직 성 명 (인)
입회자(차 장) 직 성 명 (인)

남 해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남해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사무실		
	업소 소재지			휴대폰		
	주요 취급품목		할인율		%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남해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남해화폐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없음

[별지 제5호서식]

남해화폐 가맹점 등록증

등 록 번 호	남해 -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남, 여
주 소			
상 호			
업소 소재지	경남 남해군		
취급 품목			
고객우대			

위 업소를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남해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남해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등록 번호 : 남해 - 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상 호		전화번호	(휴대폰 :)		
	업 소 소재지					
	주 소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남해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7호서식]

<table>
<tr><td colspan="6">남해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td><td>처리기간
즉시</td></tr>
<tr><td rowspan="3">신
청
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남,여</td></tr>
<tr><td>상 호</td><td colspan="2"></td><td rowspan="2">전화번호</td><td colspan="2" rowspan="2">(HP:)</td></tr>
<tr><td>업 소
소재지</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사
유</td><td colspan="6"></td></tr>
</table>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남해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별지 제8호서식]

남해화폐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상기와 같이 남해화폐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가맹점 남해 - 호)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입 금 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지점장 귀하

남해화폐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별지 제9호서식]

남해화폐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권면금액	매 수	폐기방법	비 고
계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지난 남해화폐를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인)

입회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인)

남 해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본인인증 대체 신청서

☑ 남해화폐 화전(花錢)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본인인증을 필수로 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은 최초 1회에 한하며 이후 구매 시에는 본인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아래의 주의사항에 유념하여 본인인증 대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는 화전(花錢) 구입이 제한됩니다.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 락 처

사 유 (※ 해당 사유에 V 표시)	□	휴대전화 명의가 다름
	□	휴대전화 없음
	□	카드 없음

주의사항

☑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가 있음에도 본인인증 없이 남해화폐를 구입하는 등 부정구입이 적발 시에는, 남해화폐 구매한도 추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며 향후 남해화폐 구입을 제한합니다.

※ 건전한 남해화폐 유통을 위하여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 본인인증 없이 종이 남해화폐를 구입한 후 명의가 다른 휴대전화로 모바일 남해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휴대전화 명의자의 남해화폐 구매한도가 모바일 남해화폐 구매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열람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는 남해화폐 통합 관리를 위해 상품권 판매기관, 한국조폐공사, 남해군에서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상품권 할인구매 혜택이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20-1293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62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70,000	2020.10.23. 2030.10.22. (10년)	경남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438번길 25	양봉호 외 1명(양범석)	제162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63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50,750	2020.10.23. 2030.10.22. (10년)	경남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883번길 18	양광민 외 4명(박영호, 지응구, 고은이, 이양현)	제163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64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70,000	2020.10.23. 2030.10.22. (10년)	경남 통영시 도산면 도산일주로 2169-1	조일석 외 3명(장영남, 김종범, 이대관)	제164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65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65,250	2020.10.23. 2030.10.22. (10년)	경남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438번길 68	김동균 외 1명(김희정)	제165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66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65,250	2020.10.23. 2030.10.22. (10년)	경남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438번길 68	김동균 외 2명(서홍민, 고현주)	제166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67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65,250	2020.10.23. 2030.10.22. (10년)	경남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426	윤기전 외 3명(이수성, 조성덕, 조재환)	제167호 재개발

※ '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남 해 군 공 보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62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70,000	2020.10.23. 2030.10.22. (10년)	경남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438번길 25	양봉호 외 1명(양범석)	
남해양식 제163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50,750	2020.10.23. 2030.10.22. (10년)	경남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883번길 18	양광민 외 4명(박영호, 지응구, 고은이, 이양현)	
남해양식 제164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70,000	2020.10.23. 2030.10.22. (10년)	경남 통영시 도산면 도산일주로 2169-1	조일석 외 3명(장영남, 김종범, 이대관)	
남해양식 제165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65,250	2020.10.23. 2030.10.22. (10년)	경남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438번길 68	김동균 외 1명(김희정)	
남해양식 제166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65,250	2020.10.23. 2030.10.22. (10년)	경남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438번길 68	김동균 외 2명(서홍민, 고현주)	
남해양식 제167호	패류양식 (수하식)	굴류	설천 문항	65,250	2020.10.23. 2030.10.22. (10년)	경남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426	윤기전 외 3명(이수성, 조성덕, 조재환)	

남해양식 제 562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 척 : 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N 34-55-08.05, E 127-55-35.91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70,000 ㎡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5-09.067	127-57-05.150	가-나	400
나	34-55-08.495	127-57-20.889	나-다	175
다	34-55-14.167	127-57-21.220	다-라	400
라	34-55-14.740	127-57-05.481	라-가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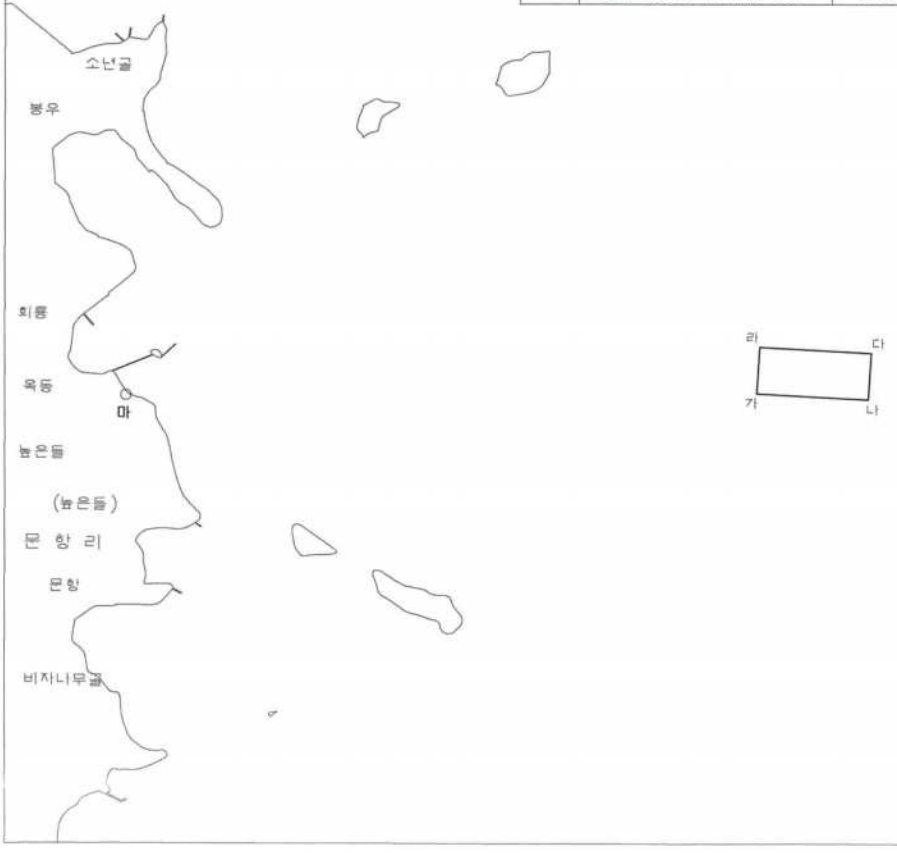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CO
TEL. (055)863-135

남해양식 제 563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 척 : 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N 34-55-08.05, E 127-55-35.91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750 ㎡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5-05.755	127-57-07.085	가-나	175
나	34-55-00.083	127-57-06.752	나-다	290
다	34-54-59.629	127-57-18.162	다-라	175
라	34-55-05.300	127-57-18.495	라-가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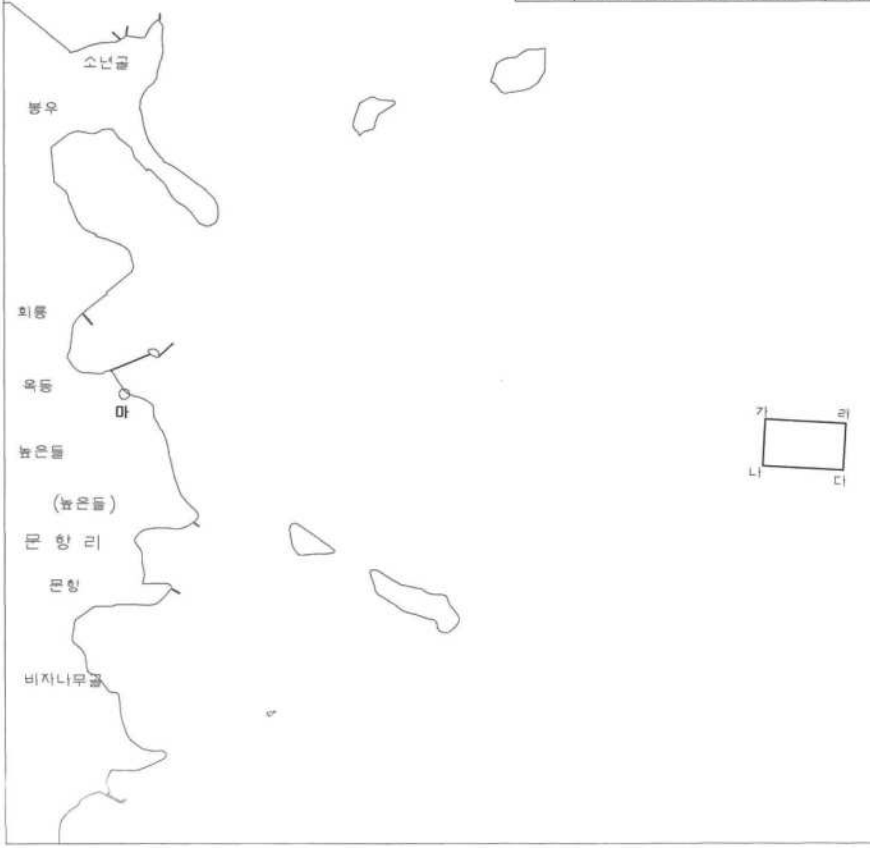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CO
TEL. (055)863-1363

남해양식 제 564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 척 : 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N 34-55-08.05, E 127-55-35.91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70,000 ㎡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4-51.271	127-57-04.053	가-나	400
나	34-54-50.666	127-57-19.792	나-다	175
다	34-54-56.338	127-57-20.113	다-라	400
라	34-54-56.943	127-57-04.374	라-가	175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CO
TEL. (055)863-1

남해양식 제565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 척 : 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N 34-55-08.05, E 127-55-35.91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65,250 ㎡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4-49.475	127-56-38.182	가-나	150
나	34-54-44.673	127-56-37.224	나-다	435
다	34-54-42.383	127-56-54.131	다-라	150
라	34-54-47.185	127-56-55.090	라-가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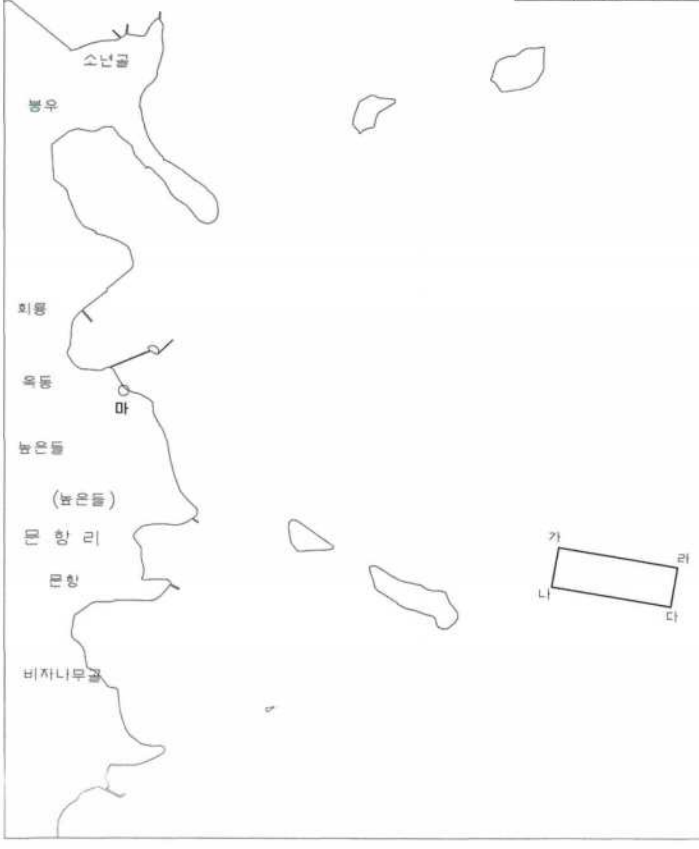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
HAN YANG ENGINEERING.CO
TEL. (055)863-1353

남해양식 제 566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 척 : 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N 34-55-08.05, E 127-55-35.91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65,250 ㎡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4-41.401	127-56-36.543	가-나	150
나	34-54-36.591	127-56-35.643	나-다	435
다	34-54-34.440	127-56-52.577	다-라	150
라	34-54-39.251	127-56-53.477	라-가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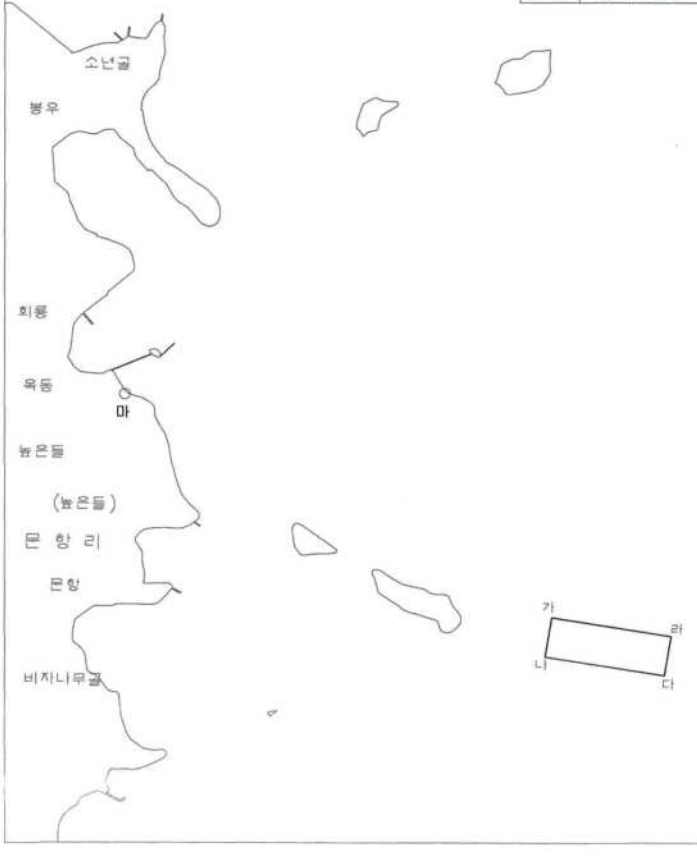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CO
TEL. (055)863-135

남해양식 제 561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 척 : 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N 34-55-08.05, E 127-55-35.91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65,250 ㎡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4-33.350	127-56-35.063	가-나	150
나	34-54-28.544	127-56-34.132	나-다	435
다	34-54-26.320	127-56-51.051	다-라	150
라	34-54-31.126	127-56-51.982	라-가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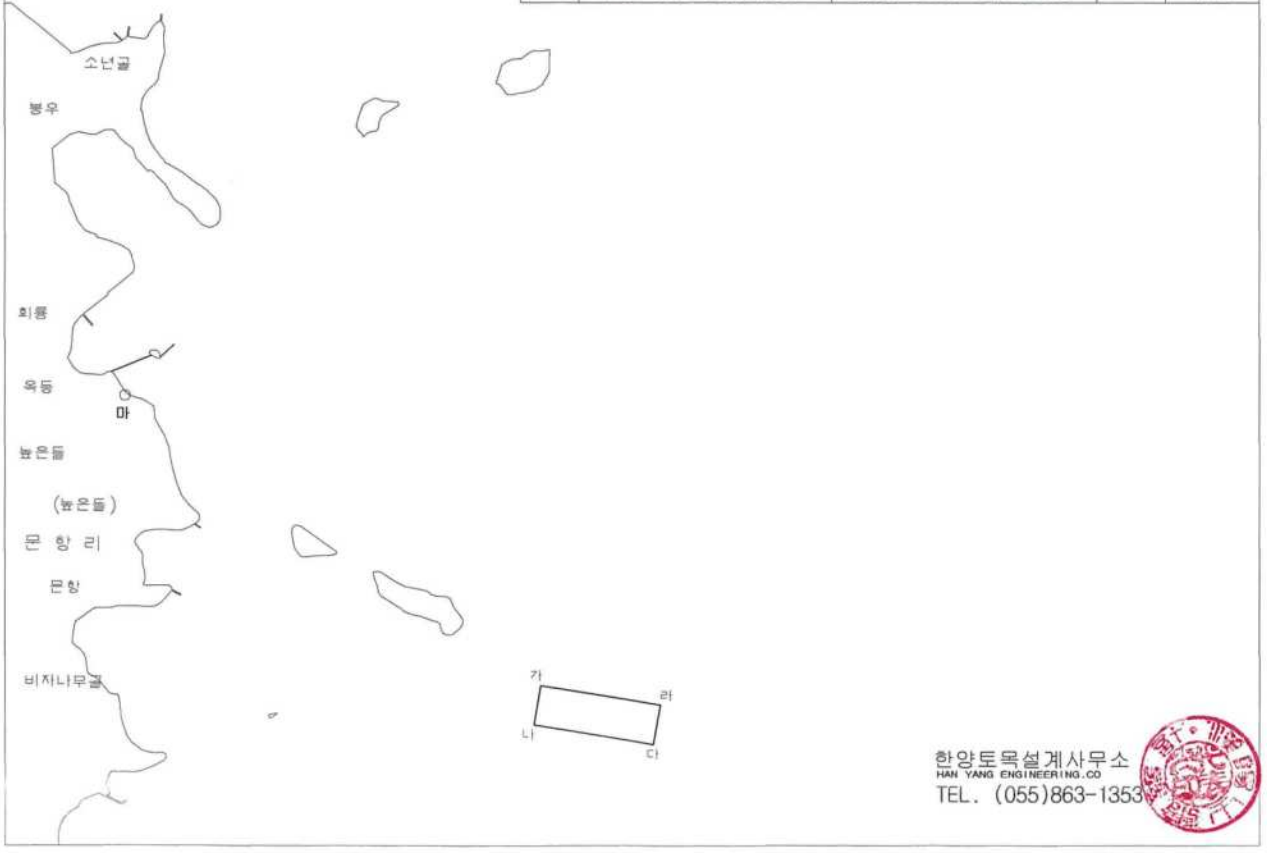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0 - 1295호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지역사회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온종일 돌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조례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2조)
다. 남해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8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는 2020. 11 .1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청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을 제출할 곳
1) 주 소 :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아동복지팀
2) 연락처 : 팩스 055-860-3750, 전화 055-860-8647, 864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청년혁신과 아동복지팀(055-860-86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4. 온종일 돌봄에 대한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 사업 정착·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온종일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온종일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남해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나.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다. 온종일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라.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체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 확충 및 활성화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남해군 다함께돌봄센터

제13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수요와 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남해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4조(돌봄 서비스의 우선지원) ① 군수는 센터 이용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우선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하는 경우
2. 초등학교 저학년
3. 다자녀 가구 및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거주 아동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군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돌봄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이용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아동의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에 따른 발생 비용

제16조(이용료 면제) ① 군수는 센터 이용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센터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1297호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남해군 친환경 농·림·축·수산업과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치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생산 미생물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배양센터의 위치, 기능(안 제1조~제4조)
   나. 관리 및 운영, 예산 지원, 생산수급계획(안 제5조~제7조)
   다. 공급대상 및 공급기준, 유상공급의 경우 공급가격, (안 제8조~제10조)
   라. 공급의 제한 및 시행규칙(안 제11조, 제12조)

마. 조례 시행규칙안(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시행규칙의 목적, 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판매금액 반환 및 무상공급의 범위에 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등 대장비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11월 1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 농업기술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953, 팩스 055-860-3983
이메일 nj23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농업기술과 환경농업팀(전화 055-860-39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명 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친환경 농림축수산업과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이란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복합균,클로렐라 등 친환경 농림축수산업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미생물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배양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배양센터가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수급계획)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대상) ① 친환경미생물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제9조(공급기준) 친환경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급대상, 미생물의 종류·처리방법·생산량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정한 평균 기준량 범위 내
2. 군의 농림축수산업, 환경보전과 관련된 실증시범, 시험·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경우
4.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공급가격)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단가는 별표와 같다.

제11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 외로 반출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2. 판매, 교환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적정 사용 기준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5. 친환경미생물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련 서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친환경미생물 공급단가(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위	가격	비 고
바실러스균, 유산균, 효모균 등	1L	1,000	멸균배양
복합균, 광합성균	1L	300	살균배양
클로렐라	1L	160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공급) ①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에 따른 유상공급을 신청하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판매금액의 반환) 친환경미생물의 판매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급받은 친환경미생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4조(무상공급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무상공급 평균 기준량은 별표와 같다.

제5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1.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친환경미생물 판매대금 수입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친환경미생물 무상공급 평균 기준량(제4조 관련)

공급대상	미생물 종류	용도	평균 기준량 (1회/주)	비 고
농림업 경영자	복합균	토양관주, 엽면시비, 퇴비부숙 등	20L	
	클로렐라	토양관주, 엽면시비 등	1L	
축산업 경영자	바실러스균	생균제, 축사살포	2L	
	유산균	생균제	1L	
	효모균		1L	
	복합균	축사살포, 퇴비부숙	20L	
수산업 경영자	복합균	수질개선 등	20L	
	광합성균		20L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 월일	
	주 소 (소재지)			
	연락처 (☎)	*집 : *휴대전화 :	대표자 (성별)	남 / 여

□ 신청내용

구분		미생물의 종류						
	계	바실러스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복합균	클로렐라	( )
신청량(L)								
미생물 사용 목적	농림업 경영자	1. 토양관주( ) 2. 엽면시비( ) 3. 토양+엽면시비( ) 4. 퇴비부숙( ) 5. 기타 ( )						
	축산업 경영자	1. 사료급여( ) 2. 곤포사일리지( ) 3. 축사살포( ) 4. 퇴비부숙( ) 5. 기타 ( )						
	수산업 경영자	1. 수질개선( ) 2. 기타 ( )						
	기타							

※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육사실확인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등 공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 약 사 항

○ 미생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영리 목적 또는 군 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미생물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하고 이에 대한 안내에 따른다.
○ 미생물 사용법 등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서약사항 등 제반 규정 위반 시 공급을 제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와 같이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뒤쪽)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친환경미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① 제공받는 기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친환경미생물의 원활한 공급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 ▸친환경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	▸필수 기재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선택 기재항목 : 미생물 사용목적, 영농규모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3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제공받는 기관	문자전송 업체
② 이용 목적	▸친환경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	▸성명,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3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연번	생산 미생물	배양기간		생산량 (L)		확 인 자		
		개시일	완료일	금 일	누 계	담당자	팀장	과장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

월/일	공급 미생물	신 청 인					공급량 (L)	비고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사용목적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미생물 판매대금 수입대장

연번	공급 미생물	신청인		월/일	판매량	수입금액 (원)	확 인 자		
		성명	주소				담당자	팀장	과장
				/					
				/					
				/					
				/					
				/					
				/					
				/					
				/					
				/					
				/					
				/					
				/					
				/					
				/					
				/					
				/					

남해군 공고 제2020 - 129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이경0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소하천명		대인대끝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1027번지		
	면적	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10. 23. ~ 2025. 10. 22.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설치		

남해군보건소 공고 제2020 - 42호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치매관리 및 예방을 위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치매관리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 및 지원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협의체 구성 및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11조)
사. 비밀누설의 금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는 2020.11.0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을 제출할 곳

1) 주 소 : ㉾52413,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남해군보건소 치매예방팀

2) 연락처 : 팩스 055-860-8799, 전화 055-860-869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보건소 치매예방팀(전화 055-860-86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시간·장소·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따라 남해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향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과 범위)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만 60세 이상의 군민
2. 치매환자 및 그 가족

② 군수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치료 및 진단검사비용
2.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3.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4. 배회감지기 등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통신비 등 요금
5.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양부담완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경비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3.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보건소에 남해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3.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치매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를 위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남해군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치매업무 및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임직원
2. 치매환자의 가족
3. 치매관련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포상) 군수는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